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6월 25일(목) 12시부터(심의위 종료시)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심의 결과에 따라 자료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.)

배포일시	2020. 6. 24.(수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
담당과장	안세진 과장(044-203-4510) 권기만 팀장(044-203-4520) 김국일 과장(044-202-2420)	담 당 자	홍석민 사무관(044-203-4512) 신상훈 사무관(044-203-4523) 이정신 사무관(044-202-2415)

규제 샌드박스, 민-관 협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시대를 앞당긴다!

- 8개 승인과제 중 6개 과제 비대면 서비스 관련 -

-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, 대한상의 1호 과제 승인 -

◇ 산업부,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허가 3건, 실증특례 5건 등 8건 승인 의결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6.25(목), '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**를 개최하고, '재외국민 비대면 진료·상담 서비스', '홈(home)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', '공유미용실 서비스', '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' 등 **8건의 안건**을 상정하였다.

□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'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'에 따라 **'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**[*]**(민간 전담기구)'로 지정된 대한상의**에 **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**되는 자리로서,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·상담 서비스(인하대 병원)가 **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**되었다.

* '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' 발표(1.23) →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(5.4, 국무회의 통과) → 대한상의 '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' 출범식 개최(5.12)

○ **대한상의**가 과제신청, 컨설팅,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함으로써, **민-관 협업**을 통해 **샌드박스 문턱이 낮아지고 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**할 수 있게 되면서, **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에도 의미 있는 첫걸음**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□ 이번 심의위원회에 **임시허가 3건, 실증특례 5건** 등 **총 8건의** 과제가 상정·승인되었고,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('19.1.17) 이후, **누적 59건의 융합 신제품·서비스**에 대한 **규제 애로**가 **해소**되었다.

*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실적 : 실증특례 37건, 임시허가 9건, 적극행정 13건

<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>

○ **일시 / 장소** : '20.6.25(목) 10:00 / 대한상의 지하 2층 중회의실A

○ **참석자** : 산업부 장관, 정부 당연직 위원, 민간위원, 관계부처 등

○ **안　건** : 임시허가 3건, 실증특례 5건

- (임시허가) 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·상담 서비스(인하대 병원)
 ②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·상담 서비스(라이프시맨틱스)
 ③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(현대자동차)
- (실증특례) ④ 홈(home)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(네오펙트)
 ⑤ 공유미용실 서비스(제로그라운드)
 ⑥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(도시공유플랫폼)
 ⑦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(나투스핀)
 ⑧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·도로노면 점검 서비스(무지개연구소)

○ 특히,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중, **6건*이 '비대면 서비스' 관련 과제**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**소비·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**되는 가운데, 이러한 흐름이 **샌드박스에도 반영**된 것으로 보인다.

*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·상담 서비스(2건), 차량 SW 무선 업데이트, 홈(home)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, AI 주류 무인판매기,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·도로노면 점검 서비스

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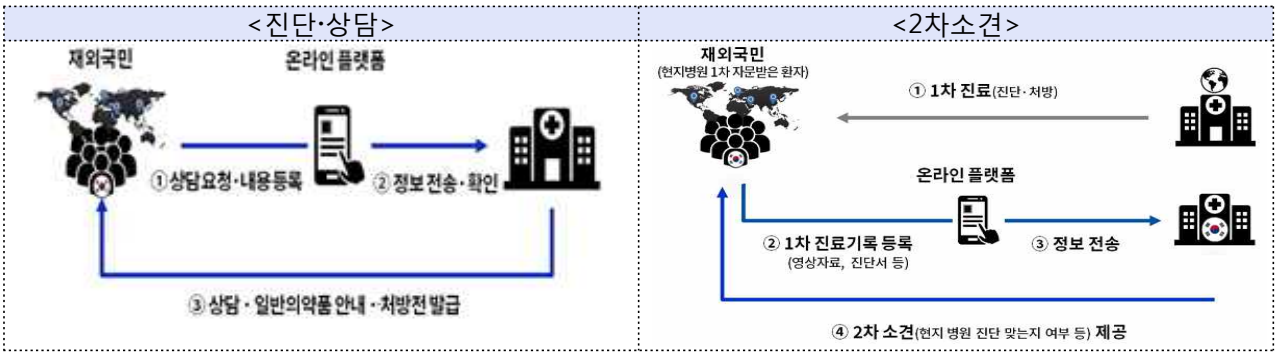
[안건1~2]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·상담 서비스 [인하대병원, 라이프시맨틱스] : 임시허가

□ (신청 내용) **인하대병원, ㈜라이프시맨틱스***는 **재외국민 비대면 진료·상담 서비스**에 대한 **임시허가**를 각각 신청하였다.

*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,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분당 서울대병원, 서울 성모병원,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제공할 예정

○ **의료기관**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, 전화·화상 등을 통해 **재외국민**에 **의료상담·진료 등의 서비스**를 제공하고,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**처방전**을 **발급**한다.

<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·상담 서비스 개요 >



□ (**현행 규제**) 현행「의료법」상 **원격의료**는 **의사-의료인간**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, **의사-환자간 진단·처방** 등의 **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**되어 있다.

○ 다만,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**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**이 있었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규제특례심의위는 인하대병원, 라이프시맨틱스-협력 의료기관이 **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**를 **제공**할 수 있도록 **2년간**의 **임시허가**를 **부여**하였다.

○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**언어·의료 접근성**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**현지 의료서비스 이용**에 **애로**를 겪는 **재외국민 보호 목적**에서 부여된 것으로, 보건복지부는 추후 **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**에 착수할 예정이다.

* 외교·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 부여

□ (**기대 효과**)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**재외국민**은 **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**의 **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**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**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**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, 유학생 등에 대한 **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어,** 재외국민의 신체적·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지고,

○ 특히, **코로나19 팬데믹**으로 **건강을 위협**받고 있는 **해외 근로자** 및 **가족** 등*을 보호하는데 **크게 기여**할 것으로 **기대**된다.

*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으로 중동 국가 내 코로나 19 확진자 약 60여명 발생(6.1기준)
** "해외 프로젝트 현장이 많은 중동에서 자국민 우선 진료로 인해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등 재외국민의 진료 접근 곤란" (A건설)

[안건3]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: 임시허가

□ (**신청 내용**) **현대자동차㈜**는 '**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**'에 대한 **임시허가를 신청**하였다.

○ 신청기업은 기존에 **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**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* 업데이트를 **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**(OTA**)**할 수 있는 서비스**를 제공하고자 한다.

* 무선 통신장치,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, 에어백 제어장치 등
** Over The Air : 무선통신을 이용한 SW 업데이트를 뜻하는 용어로서 자동차에 주로 사용

<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서비스 >



□ (**현행 규제**)「자동차관리법」시행규칙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**무선 업데이트가**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행하는 **점검·정비 작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**하고, 만약 **점검·정비작업에 해당될 경우,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**된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심의위원회는 **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·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**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는 해당되나, **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** 받을 수 있도록 **임시허가 승인을 의결**하였다.

* 무선업데이트 사항을 국토부에 제출,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실시 조건

○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,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**정비업 작업에서 제외**하여, 정비업자가 아니거나,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**관련 법령을 정비**하기로 하였다.

□ (**기대 효과**) 자동차 **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**를 **개선**하거나 **신기능을 추가**할 경우, 여러 차량에 대해 **간편·신속하게 동시 업데이트**가 가능하고, 소비자도 업데이트 할 때마다 **정비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**으로 기대된다.

○ 또한, **미래차·커넥티드카*** **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**하여 **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**할 것으로 전망된다.

* 자동차-IT기술 융합으로 상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차량으로 원격 차량진단, 인포테인먼트(Infotainment), 텔레메틱스(Telematics) 등 제공

[안건4] 홈(home)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: 실증특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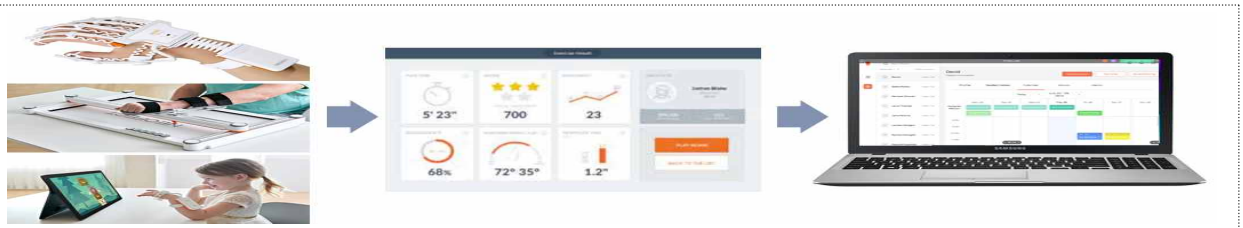
□ (**신청 내용**) ㈜**네오펙트**는 **'홈(home)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'**에 대한 **실증특례**를 **신청**하였다.

○ 이번 실증은 **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, 뇌졸중 노인 환자** 등이 **가정 내에서**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하여 **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**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.

* (1단계) 병원 내 사용성 평가센터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 및 안전성 테스트 실시 → (2단계) 재활병원과 연계, 소아마비·뇌졸중 환자 등 약 2,000명을 대상으로 실증(국립재활원, 부산대병원(양산), 희연병원(창원) 참여가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확대 가능성)

○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, 환자는 **집에서 스마트 글러브·보드** 등 **기기를 활용하여 재활훈련을 수행**하고, 의사·의료기사는 훈련 모니터링 및 AI 추천 등을 참고하여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**재활훈련에 대한 비대면 상담·조언**(화상통화)을 **제공**하게 된다.

<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활용 프로세스 >



① 스마트 글러브/보드/키즈 ② AI가 DATA 분석 → 맞춤형 게임 추천 ③ 의사·의료기 모니터링 및 상담·조언

□ (**현행 규제**)「**의료법**」상 훈련 데이터를 App에 전송 후 병원 내 의사가 '단순 모니터링' 및 '내원 안내' 하는 것은 가능하나, **'원격 상담 및 조언'은 불가하다.**

*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(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), 동법 시행령 제2조(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) 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도 의료행위로 인정

** '의사-의료인'간 원격의료는 허용(「의료법」 제34조 제1항)

□ (**심의 결과**)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기 및 서비스의 **효과성·혁신성이 인정**되고 **기존 재활 치료 방식을 보완**할 수 있으며 **위험도도 낮다는 점** 등을 종합 고려하여 **실증특례 승인을 의결**하였다.

○ 다만,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 **피드백은 내원안내** 및 **상담까지 허용**(진단·처방 불가)되고, **AI 분석결과는 참고자료**로만 활용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.

□ (**기대 효과**) **입원·통원 등 현행 재활치료 방식을 보완**하여 **시간적·비용적 제약**으로 재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**훈련접근성을 높이고, 안정적인 재활 치료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.**

* 통원 재활치료 비용(업체 추정) : 진료·치료비 제외 월 평균 56만원 비용 소요(월 14회 치료 기준, 교통비, 보호자 동반, 내원 시간 기회비용 등 고려) → 진료비 등 포함시 연간 약 1.9천만원

** 약 86%의 뇌졸중 환자가 재활 치료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(보건의료연구원)

○ 해당 서비스를 통해 **보다 저렴한 비용**으로 **환자가 원하는 시간**에 훈련을 할 수 있어, **편의성이 개선**되고,

○ 스마트 기기로 수집된 **다양한 데이터**와 **맞춤형 훈련 프로그램**을 활용한 재활지도로 **재활 치료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**으로 기대된다.

[안건5] 공유미용실 서비스 : 실증특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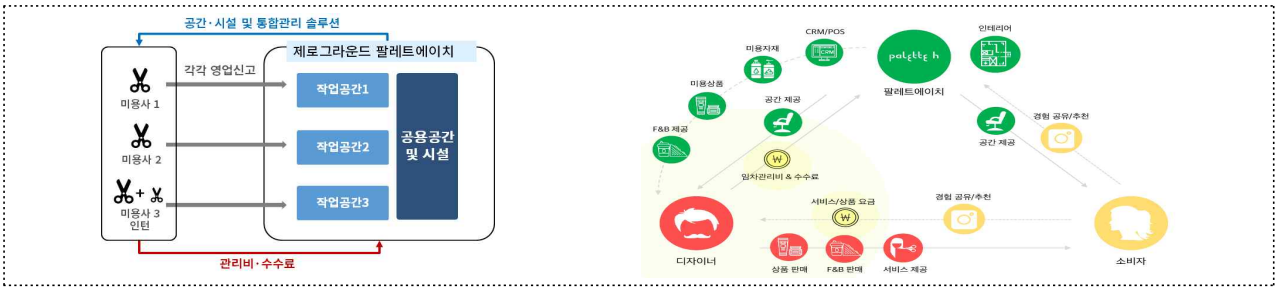
□ (**신청 내용**) **제로그라운드㈜**는 **'공유미용실 서비스'**에 대한 **실증특례**를 **신청**하였다.

○ 신청기업은 **1개 미용실** 내에서 **다수의 미용사**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통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, **미용 설비·시설*을 공유**하고자 한다.

* 설비 : 열펌 기구, 미스트 기구, 셋팅 장비, 디지털펌기, 직펌기, 도포기 등
시설 : 샴푸대, 고객 대기석, 중화 및 펌 기구 이용석, 약품 준비실 등

○ 신청기업은 **공용시설**(샴푸시설 등), **통합관리 솔루션**(고객 예약 관리, 물품구입, 재고관리 등)을 제공하고, 각각의 미용사들은 **월 임차료와 관리비만 지불**하여 **개별적으로 영업**(독립사업자)을 하게 된다.

< 공유미용실 개념 및 신청기업의 사업모델 >



□ **(현행 규제)**「**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**」에 따르면, 1개 영업장에서 **각각의 개별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** 2개 이상의 **미용업 영업이 가능***하며, 샴푸실, 열펌 기계 등 **시설·설비를 공유할 수 없다.**

* 다른 종류의 미용업을 하는 경우 가능하나, 같은 종류의 미용업을 하는 경우는 불가
** 미용업종류 : 일반, 피부, 손톱·발톱, 화장·분장, 종합으로 구분(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2)

□ **(심의 결과)** 심의위원회는 공유미용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장 임대료 등 높은 **창업·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**, 빈번한 **폐업 리스크를 완화**하기 위해, **복지부에서 제시한 조건*** 이행을 전제로 **실증특례를 승인을 의결**하였다.

* ① (책임보험)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, 각 미용 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 가입
② (공동책임) 위생·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제공자에게 행정처분(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), 원인 미확인 시 공유미용실 미용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

□ **(기대 효과)** 현재 미용실은 **5곳 중 1곳이 1년 내에 폐업하는 실정**으로, 이들 중 상당수가 매장 임대료, 인테리어비 등 **높은 초기비용**과 **운영비용 부담**을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.

* 전국 미용실/미용업 종사자 현황 : 약 14만개소/ 23만명(통계청, '18년 기준)
** 미용실 1년 생존율 80.5%, 5곳 중 1곳은 1년 내 폐업(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, 2019년 3분기 기준)

○ 공유미용실은 **월 임차료·관리비만 지불**하면 **미용 사업**을 할 수 있어 소자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, **매출액에서 임차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곧 수익으로 직결**되어 **소상공인 경영에도 활력**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또한, **고객 예약관리·재고관리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**을 제공하여, 미용사들이 **미용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**을 조성하는 등 **근로환경 개선**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[안건6]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: 실증특례

□ (신청 내용) ㈜**도시공유플랫폼**은 '**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**'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.

○ 해당 자동판매기는 **스마트폰** App(판매기 연동)을 통해 **본인확인***이 이루어지며, **AI 사물인식 기능**의 **접목**으로, 제품반출 시 **자동**으로 **상품·수량 인식** 및 **결제**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.

* (최초이용) 통신사 본인확인(문자전송) + 결제 시 본인확인(홍채인식, 지문인식, 비밀번호 입력 등) → (재이용시) 결제 시 본인확인만 진행

○ **이번 실증**은 위 자동판매기를 **일반음식점·편의점·슈퍼 등에 배치**하여 **운영**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

<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 예시 >



□ (현행 규제) 국세청의 「**주류의 양도·양수방법,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**」에 의해, '전문소매업장', '유흥음식업장', '슈퍼·연쇄점 가맹점' 등에서 **주류 자동판매기 사용이 금지**되어 있다.

□ (심의 결과) 심의위원회는 해당제품이 **App 성인인증**과 기존 **키오스크**의 **결합**을 통해 **무인·자동 주류 판매**가 **가능**한 **'산업융합 신제품'**이며,

○ **스마트폰 App**을 통해 **성인인증**(본인확인)이 이루어지므로, 미성년자의 **주민등록증 위·변조 및 도용을 통한 주류구입을 예방**하고,

○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하여 **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***을 받는 **소상공인 보호에 기여**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**실증특례**를 의결하였다.

*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3,339건 중 2,619건(78.4%)이 청소년 고의신고로 적발(외식업중앙회, '10~'12년)

○ 다만, 예상하지 못한 오·남용 가능성 검증을 위해 **1차년도**에 현장 관리자, CCTV가 설치된 **일반음식업장**에서 먼저 시행하고, 부작용이 없을 시, **2차년도**에 **유·무인 편의점 및 슈퍼**로 **실증을 확대**할 **예정**이다.

□ (**기대 효과**) 미성년자 주류 구입 방지와 **악성 신고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**하고, **본인확인**과 **주류 결재·재고관리가 자동**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**관리비가 절감**되어, 1인 매장 등 일손이 부족한 **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도움**이 될 전망이다.

○ 장기적으로 무인 주류 자동판매기의 **안전성 및 효율성** 검증을 통해, **무인매장***, **비대면 결제 시스템** 등 **'언택트 서비스' 활성화에도 기여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(해외) 美 AmazonGo, 中 빙고박스 (국내) CU, GS, 세븐일레븐 등 무인편의점 운영

[안건7]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: 실증특례

□ (**신청 내용**) ㈜**나투스핀**은 '**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**'에 대한 **임시허가를 신청**하였다.

○ 해당 서비스는 **반려동물 동반승객**이 이용하는 **펫택시**(동물운송업)와 **모바일 중개서비스를 융합**한 O2O(Online to Offline) 서비스로서,

○ **렌터카를 활용**하는 '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'를 통해 **펫택시 공급 유연성을 확대**하고 **소비자 편의성**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.

*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택시 승차거부, 버스 이용객의 시선 부담 등으로 기존 교통수단 이용에 애로 발생

< 렌터카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활용 예시 >



□ (**현행 규제**)「**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**」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동반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'여객의 운송'으로 해석하고,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**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**하고 있으며,

○ 동물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「**동물보호법**」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나 **렌터카 활용에 대한 등록·관리 지침이 없는 상황**이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심의위원회는 **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**하는 상황에서 **반려동물 동반고객의 이동권을 보장**하는 것이 필요하나,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'**실증특례로 전환하여 의결***' 하였다.

* 임시허가로 신청 →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실증특례 승인으로 의결

○ 실증을 위해「동물보호법」제33조에 따라 동물운송업으로 등록된 펫택시용 렌터카에 대해「**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4조제1항에 대한 특례를 부여**하되,

- 실증기간 중 일반택시와 쉽게 구분되는 펫택시 표식*을 부착하여 영업하고, 불법택시영업(여객만 승차),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른 동물 학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**신청기업이 즉시 특례 사업에서 배제*** **하여야 한다.**

* 차량 측면에 '반려동물 이동서비스' 등을 표시 ⇒ 불법택시영업 단속의 실효성 확보
** 사후관리 및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 계속 위반 시, 청문을 통해 신청기업 특례 취소 예정

○ 또한, 실증기간 범위 내에서 렌터카의 **임차기간을 영업기간으로 명기**, **실증규모 120대*까지 허용**, 등록·영업지역 **서울특별시로 한정**, 이동은 인접 시·도에 한해 허용하는 등 조건이 부가되었다.

* 추가 증차는 농림부와 논의하여 결정

□ (**기대 효과**) **펫택시 초기 투자부담이 완화**됨으로써, 공급유연성이 확대되고, **소비자 이용편의성 개선**과 **반려동물 운송시장 확대**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.

* 신청기업에 따르면, 반려동물 보유인구(1,500만명) 중 17.4%가 펫택시 이용 의사

○ 또한, 대리운전기사(야간), 에어컨정비기사(여름) 등 **일감이 제한적인 개인사업자**가 **프리랜서로 참여**함으로써 유휴시간 활용을 통해 **사업기회 확대**도 일부 기대된다.

[안건8]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·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: 실증특례

□ (**신청 내용**) ㈜무지개연구소는 **'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·도로노면 점검 서비스'**에 대한 **실증특례**를 **신청**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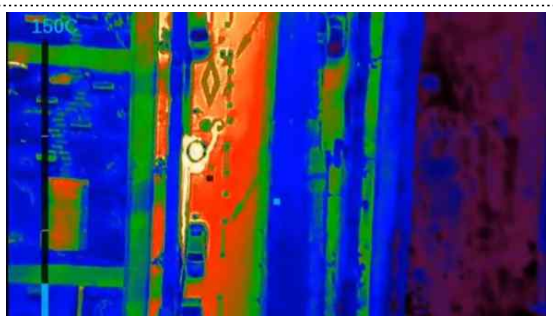
○ 이번 실증은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의 효과성·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, **AI 제어기술이 탑재된 드론**과 **원격제어 및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관제시스템** 등을 종합 테스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.

○ **열배관**은 **부산시**(명지 국제신도시 일대)에서, **도로노면은 대구시**(달구벌대로 일대)에서 실증이 진행되며, 현행 육안 중심의 점검방식을 보완하여 **시설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**에 도움이 되는 新**서비스를 제시**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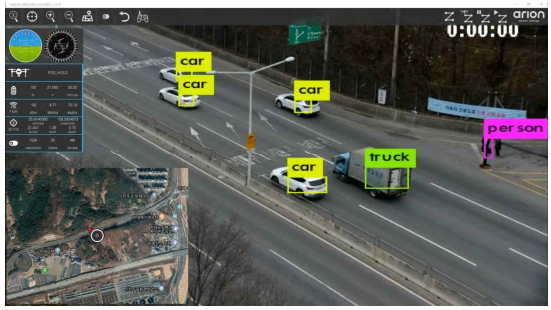
* 부산도시가스 업무협약('19.12월), 대구시설공단 업무협약('20.5월)

< 열배관 및 도로 노면상태 점검 서비스 예시 >

- 도심 내 열(온수)배관 매설지역 상공을 비행(자율비행)하며 열화상카메라로 배관 파손부위 점검(실시간 영상 스트리밍)
- 도심 내 자동차 전용도로 상공을 비행(자율비행)하며 광학카메라로 노면파손 부위 및 차선도색 상태를 점검(실시간 영상 스트리밍)



도심 내 지하 열배관 이상여부 점검



도심 내 자동차 전용도로 노면 이상 점검

○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승인('19.10월)된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서비스와 함께, **드론의 안전관리 분야 활용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**된다.

□ (**현행 규제**) 항공안전법, 보안업무규정, 개인정보보호법, 위치정보보호법, 등 다양한 분야의 **'복합 규제'**가 확인되었다.

○ 먼저, 현행「**항공안전법**」및「**보안업무규정**」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**드론 비행**시 **비행 승인** 및 **촬영 허가**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, 특히 드론의 **비가시권·도심 내 비행**은 '**특별비행승인**'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.

*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이 군 관할 공역에 해당시 위탁규정 등에 따라 국방부 장관 승인 필요, 군 관할공역에서 항공 촬영시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 필요

○ 또한,「**개인정보보호법**」상 개인에 대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경우 **개인정보**의 **수집·이용** 등이 **제한**되며, **위치정보보호법**」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**개인위치정보**의 **수집·이용** 등이 제한된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심의위원회는 시설물 관리의 효과성 등 **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**하며, **기술 완성도 및 서비스 효용성 제고** 등을 위해 안전성 조치 조건*하에 **실증특례 승인**을 의결하였다.

* 국토부·국방부 등 관계부처 제시 조건 이행(시스템 구성 검토 및 점검, 고장단계 검증 여부 확인 등, 관할 부대장 사전 협의, 비행계획 월 단위 제출, 관제탑과 연락망 유지 등, 국가·군사보안시설 촬영 금지, 촬영 관련 상세 제원 제공, 열배관 문제 부위에 한해 제한적 활용, 대구 지역 실증구역 일부 축소 등)

○ 조건 이행을 전제로, **드론 비행 승인** 및 **촬영 허가기간**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**연장 허용**하고, 안전검토·제한사항 충족시 **'특별비행승인' 승인 허용**, 비식별 조치 등 전제로 **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** 등을 부여하기로 의결하였다.

□ (**기대 효과**) 드론을 활용한 도심 내 주요 시설물 점검을 통해 현행 점검 방식*의 보완으로 **사고위험 예방** 및 **안전성 확대가 기대**된다.

* 열배관 점검은 배관에 설치된 감지센서를 활용하거나 인력을 투입해 검사하고 있지만 센서 오작동 가능성 및 인력 투입 한계, 차량을 이용한 도로 노면 점검은 운전자의 한정된 시야에 의존하여 사각지대 존재 및 점검에 장시간 소요

○ 또한, 향후 유사 안전관리 분야 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, **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**와 전반적인 **산업 안전관리 역량**의 **개선**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【 향후 계획 】

□ **산업부 성윤모 장관**은 "이번 심의위원회는 **민간 전담기구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**들이 **처음 논의 되는 자리**로서 그 의미가 크며",

○ "대한상의가 산업계를 대표하여 **규제 샌드박스의 든든한 지원군**이 됨에 따라, **'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'가 민-관 협업**으로 **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**가 마련되었다"고 강조하였다.

□ 이어서, "오늘 상정된 8건의 샌드박스 과제 중 **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가 6건**으로 코로나19 이후 **소비·생산의 비대면화가 촉진**되고 있는 가운데, **샌드박스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**하고 있다" 평가하면서,

○ "**기존에 승인**한, **실외 자율주행 로봇**('20.3월 개시), **AI·AR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점검**('20.3월 개시), **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추천·판매**('20.6월, 7개사 중 1개사 개시) 등 **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**들이 **원활히 사업 진행 중이며 좋은 성과**를 내고 있어 고무적이다"고 밝혔다.

* 비대면 산업 관련 기존 승인 과제(**총 11건**) : 실외 자율주행 로봇, 건설기계 교육 VR 시뮬레이터, AI·AR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점검,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추천·판매(7건),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→ **4건 사업 개시**

○ 이어서 "특히, 이번 심의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민·근로자·유학생 등 **재외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**할 수 있는 과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**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'따뜻한 샌드박스' 과제**가 상정되어 보람을 느낀다"고 발언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, "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**대내외 어려움을 극복**하고 **실물경제 회복에 도움**이 될 수 있도록 **샌드박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**하다"고 강조하면서,

○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**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을 뒷받침**하여, **샌드박스가 국가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**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"고 다짐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홍석민 사무관(☎ 044-203-4512),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정신 사무관(☎ 044-202-24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개요**

□ 개최 배경

○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, 제10조의5에 따라,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 안건에 대해 **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·의결**

○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전담기구로 지정('20.5.12 개소)된 **대한상의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 최초로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예정**

□ 개최 개요

○ (일 시) 6.25(목), 10:00～12:00

○ (장 소) 대한상의 지하 2층 중회의실A

○ (참석자) 산업부 장관, 정부위원, 민간위원, 관계부처 등 30여명

□ 회의 내용

○ 임시허가·실증특례 심의안건 **총 8건** (임시허가 3건, 실증특례 5건)

* 심의 : (임시허가) '재외국민 비대면 진료·상담 서비스 등 3건
(실증특례) '홈(home)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' 등 5건

□ 세부 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10:00~10:03 ('3)	▪ 성원 보고	산업기술정책과장
10:03~10:10 ('7)	▪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	산업부 장관
10:10~11:55 ('105)	▪ 안건 심의(임시허가 3건, 실증특례 5건)	-
11:55~12:00 ('5)	▪ 마무리 말씀 및 폐회	산업부 장관